

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0월 18일)
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□ 제안이유
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기금 조성목표액 달성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,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, 위원장 직위하양, 위원의 임기 통일 등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기금 조성기간 및 조성액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3조 제2항)

나.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축소(안 제6

조 제2항)

- 다.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(안 제6조 제3항)
- 라. 기금관리공무원 변경(안 제1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61호
의결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
- 재정여건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천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조성기간 및 조성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)
- 나. 부천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10명 이내”로 축소하고,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며,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.(안 제6조)
- 다.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변경(안 제11조)
 - 기금운용관: 업무담당과장 → 업무담당국장
 - 분임운용관: 업무담당과장(신설)
 - 기금출납원: 업무담당(팀장)

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4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세입·세출예산외”를 “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①기금은”을 “기금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”를 “기금운용계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5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“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감사·회계부서장 및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
2.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
3.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

성 및 운용·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붙이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동복지업무담당 주사가”를 “아동복지업무담당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40일전”을 “40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
2. 분임운용관: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
3. 기금출납원: 아동복지업무담당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80일이내”를 “80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120일전”을 “120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“준용등”을 “준용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관리에 관하여는”을 “관리는”으로 하며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”을 “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 제142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<u>세입·세출예산외</u>로 처리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----- -----<u>세입·세출예산 외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~3. (생략) 4. 기타 수익금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시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출연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----- -----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</u>----- <u><삭 제></u>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 1.~3. (생략) 4. 기타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부천시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<u>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<u>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</u>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규정에 <u>의하여</u>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<u>1인을 포함한 1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<u>부시장</u>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④위원은 <u>다음 각호에</u>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감사 및 회계부서, 주무담당 부서장(당연직)</u> 2. <u>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</u> 3. <u>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</u> 	<p>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----- <u>기금운용계획에 따라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제6조</u> <u>에 따라</u>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--1명을 포함한 10명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<u>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</u>---- ----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----</p> <p>④ 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감사·회계부서장 및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</u> 2. <u>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</u> 3. <u>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</u>

현행	개정안
<p>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내로 하며,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
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아동복지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·2. (생략) 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다음 각 호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----- -----회의에 붙이는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아동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 ----- ----1명-----. ② ----- -----아동복지업무담당이----. ③ -----위원 중----- -----범위 내----- -----.</p>
<p>제10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<u>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③ <u>제1항에 의하여</u>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<u>40일 전</u>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해당연도</u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라</u>----- -----<u>40일 전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<u>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</u></p> <p>1. 기금운용관 : 업무담당과장</p> <p>2. 기금출납원 : 업무담당주사</p> <p>② <u>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<u>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u></p> <p>1. 기금운용관: 아동복지업무담당 국장</p> <p>2. 분임운용관: 아동복지업무담당 과장</p> <p>3. 기금출납원: 아동복지업무담당</p> <p>② <u>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2조(기금결산) ① <u>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	<p>제12조(기금결산) ① ----- -----<u>80일 이내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·3.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예에 의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1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120일 전----- -----.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---- ----관리는----- ----- ----- -----따른다.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-----.</p>